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8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구자근

박덕흠 • 주호영 • 김종양

임이자 · 정점식 · 강승규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 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35조의 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			
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			
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4년 12월 31</u>	<u>202</u> 9년 12월 <u>31</u>		
<u>일</u> 까지 감면한다.	<u>일</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